



제 43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설탕꿀 정의 신설 등〉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7244호)

2026.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1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3. 5.
3. 회 부 일 : 2025. 3.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꿀벌을 사육·관리하여 얻어지는 벌꿀, 로열젤리, 화분, 봉독, 프로폴리스, 밀랍 등 양봉의 산물 및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사업을 양봉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양봉산업의 육성과 품질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양봉산물인 ‘벌꿀’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정의가 부재함. 특히 꿀벌이 꽃꿀, 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한 ‘벌꿀’과 꿀벌을 설탕으로 사육한 ‘사양벌꿀’을 구분하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더욱이, ‘사양(飼養)’이라는 용어는 한자어로 ‘가축을 기르고 다듬음’이라는 추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일반 소비자가 이를 보고 설탕물을 먹여 만든 꿀임을 직관적으로 인지하기 매우 어렵고, 오히려 벌꿀과 유사한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벌꿀과 설탕꿀의 정의를

규정하고, 실태조사의 범위와 주기를 법률로 상향하며, 설탕꿀을 벌꿀로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도록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양봉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가목 등).

Ⅲ. 검토의견

1. 설탕꿀의 정의 규정 신설

개정안은 꿀벌을 사육·관리하여 얻어지는 벌꿀로 정의되는 벌꿀을 꿀벌들이 꽃꿀, 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한 것을 채취, 숙성한 ‘벌꿀’과 꿀벌을 설탕으로 사양한 후 벌집에 저장한 것을 채취, 숙성한 ‘설탕꿀’로 구분하여 정의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꿀벌을 사육·관리하여 얻어지는 <u>벌꿀</u> <u><신 설></u>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 ----- -----. 가. ----- ----- <u>꿀로서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꿀</u> 1) <u>벌꿀: 꿀벌들이 꽃꿀, 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한 것을 채취, 숙성시킨 것</u> 2) <u>설탕꿀: 꿀벌을 설탕으</u>

현행	개정안
나. (생략) 2. 3. (생략)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9. (생략) 10. 벌꿀 <u>생산 및</u>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11. ~ 13. (생략) ③ ~ ⑤ (생략)	<u>로 사양한 후 채밀, 숙성</u> <u>시킨 것</u> 나. (현행과 같음) 2. 3. (현행과 같음)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9. (현행과 같음) 10. -----<u>및 설탕꿀 생산과</u>----- ----- 11. ~ 1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벌꿀과 설탕꿀에 대하여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벌꿀 유형에 대한 구분은 「식품위생법」 제7조¹⁾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1)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구분되고 있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벌꿀의 식품유형에는 벌집꿀·벌꿀·사양벌집꿀·사양벌꿀이 있고, 벌꿀은 꿀벌들이 꽃꿀, 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한 것을 채밀, 숙성시킨 것을 말하며, 사양벌꿀은 꿀벌을 설탕으로 사양한 후 채밀, 숙성시킨 것을 말함.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026-21호

22.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라 함은 꿀벌들이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한 자연물 또는 이를 가공한 것으로 벌꿀류, 로열젤리류, 화분가공식품을 말한다.

22-1 벌꿀류

1) 정의

벌꿀류라 함은 꿀벌들이 꽃꿀, 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한 것 또는 이를 채밀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화분, 로열젤리, 당류, 감미료 등 다른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식품유형

(1) 벌집꿀

꿀벌들이 꽃꿀, 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하여 벌집 속에 저장한 후 벌집의 전체 또는 일부를 봉한 것 또는 이에 벌꿀을 가한 것으로 벌집 고유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벌꿀

꿀벌들이 꽃꿀, 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한 것을 채밀, 숙성시킨 것을 말한다.

(3) 사양벌집꿀

꿀벌을 설탕으로 사양한 후 채취한 벌집꿀 또는 이에 벌꿀이나 사양벌꿀을 가한 것으로 벌집 고유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4) 사양벌꿀

꿀벌을 설탕으로 사양한 후 채밀, 숙성시킨 것을 말한다.

사양벌꿀에 대한 관리제도는 꽃꿀과 사양벌꿀이 구분 없이 유통되어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되자 2009년 8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양봉협회가 사양벌꿀에 대한 자율 표시제도를 최초로 시행하였으며,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 양봉단체, 소비자 단체와 협의 및 실태조사 등을 거쳐 2016년 현재의 사양벌꿀 기준을 신설하였음. 현재 EU, 일본 등 해외에서는 벌꿀의 범위에 사양벌꿀은 미포함하고 있음.

사양벌꿀의 ‘사양(飼養)’은 먹이를 주며 기르는 것을 의미하며, 사양벌꿀은 양봉업자가 설탕물 등 인공당분의 제공을 통해 꿀벌을 기르면서 생산한 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사양벌꿀이 꿀벌에게 설탕물을 먹여 생산한 꿀임을 직관적으로 인지하기 어렵고, 설탕물을 먹여 만든 꿀이라는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은 이를 ‘설탕꿀’로 정의함으로써, 벌꿀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은 벌꿀과 사양벌꿀의 개념을 명칭단계에서부터 구분하여 제공함으로써, 가격, 품질 및 용도에 맞는 소비자의 선택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허위·혼동 표시를 감소시키려는 취지로서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사양벌꿀의 명칭을 설탕꿀로 변경하고 벌꿀과 구분하여 정의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식약처에서는 2025년 12월, 한국양봉협회에서 사양벌꿀의 명칭을 설탕꿀로 개정 요청하고 농식품부에서도 한국양봉협회의 개정 요청에 동의하여 사양벌집꿀 및 사양벌꿀의 식품유형 명칭을 개정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²⁾한 바 있음.

그러나 (사)한국벌꿀산업유통협회와 한국양봉전업농협의회가 사양벌꿀과 설탕을 섞은 설탕꿀을 같은 것으로 왜곡하거나, 설탕꿀이 설탕을 꿀과 혼합한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양봉산업의 위축을 우려하여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일부개정이 잠정 보류 중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벌꿀과 설탕꿀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에 동의하나 양봉협회 내부에서도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논란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5-522호), 2025. 12. 23.

2. 실태조사의 범위 및 주기를 법률로 상향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실태조사의 범위와 주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 부 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u>실태조사</u> 를 실시하여야 한다. <u><신설></u>	제6조(실태조사) ① ----- ----- ----- ----- <u>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u> <u>라 한다)</u>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봉농가의 꿀벌 사육·판매 <u>현황</u> 2. 양봉농가의 양봉 산물·부산 물의 생산량·판매량 및 판매 <u>금액</u> 3. 양봉의 산물·부산물의 생산 ·가공·유통·판매 사업 <u>현</u> <u>황</u> 4. 밀원식물의 지역별·종류별 <u>분포 현황</u> 5. 그 밖에 종합계획과 시행계 획의 수립·추진을 위해 필요

현행	개정안
<u><신 설></u> <u>② (생 략)</u>	<u>한 사항</u> <u>③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u> <u>1. 정기조사: 5년마다 실시하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실시</u> <u>2. 수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u> <u>④ (현행 제2항과 같음)</u>

현행법은 양봉산업의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의 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³⁾은 이를 구체화하여 실태조사의 범위로 양봉농가의 꿀벌 사육·판매 현황, 양봉농가의 양봉 산물·부산물의 생산량·판매량 및 판매금액 등을 규정하면서 5년마다 정기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조사도 가능하도록

3)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①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봉농가의 꿀벌 사육·판매 현황
 2. 양봉농가의 양봉 산물·부산물의 생산량·판매량 및 판매금액
 3. 양봉의 산물·부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사업 현황
 4. 밀원식물의 지역별·종류별 분포 현황
 5. 그 밖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5년마다 실시하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실시
 2. 수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규정하고 있음.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정책 효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을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실태조사의 안정성과 주기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체계와 달라지는 것이 없으므로 개정의 실익이 없다는 입장임.

3. 설탕꿀의 거짓 표시·혼동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개정안은 설탕꿀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자에게 ①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②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③ 설탕꿀을 벌꿀에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④ 이를 위반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⑤ 구체적인 표시 방법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6조의2(설탕꿀의 거짓표시 금지 등) ① 제2조제1호가목 중 설탕꿀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설탕꿀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벌꿀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설탕꿀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3. 설탕꿀을 벌꿀에 혼합하여 벌꿀로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현행	개정안
제20조(과태료) <신설>	<u>별꿀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u> <u>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봉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벌꿀과 설탕꿀의 구체적인 표시방법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u>
<u>① (생략)</u> <u>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u>	제20조(과태료) ①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설탕꿀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② (현행 제1항과 같음)</u> <u>③ 제1항 및 제2항에-----</u> ----- ----- -----

개정안은 설탕꿀이 벌꿀과 유사한 제품으로 오인되지 않기 위하여 설탕꿀을 벌꿀로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불법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벌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정직한 생산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벌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임.

다만, 현행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봉산업법’)은 벌꿀 등의 표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벌꿀과 사양벌꿀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에 따라 표시를 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제한을 받고 있음.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에 근거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벌집꿀·벌꿀의 경우 주밀원의 종류에 따라 아카시아꿀, 밤꿀 또는 잡화꿀 등으로 구분·표시하여야 하며, 사양벌꿀 또는 사양벌집꿀의 경우 주 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사양벌꿀 또는 사양벌집꿀입니다’로 표시하여야 함.

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⁴⁾되는 특별법으로 제4조 및 제8조에서 식품, 축산물 등에 대해 표시기준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⁵⁾하고 있음.

4)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5)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이를 고려하면, 개정안의 ①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②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는 현행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임.

또한, 현행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벌꿀과 사양벌꿀에 대해 규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벌꿀과 사양벌꿀의 규격은 유사하나 벌꿀은 탄소동위원소비율이 - 22.5‰ 이하여야 하며, - 22.5‰를 초과하는 경우 사양벌꿀의 규격에 해당함.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및 글씨크기·표시장소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생략)

4.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이하 생략)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2. 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꿀 등의 규격

항목 \ 유형	별집꿀	별꿀	사양별집꿀	사양별꿀
(1) 수분(%)	23.0 이하	20.0 이하	23.0 이하	20.0 이하
(2) 물불용물(%)	-	0.5 이하	-	0.5 이하
(3) 산도(meq/kg)	-	40.0 이하	-	40.0 이하
(4) 전화당(%)	50.0 이상	60.0 이상	50.0 이상	60.0 이상
(5) 자당(%)	15.0 이하	7.0 이하	15.0 이하	7.0 이하
(6)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mg/kg)	80.0 이하			
(7) 타르색소	-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8) 사카린나트륨	-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9) 이성화당	-	음 성 이 어 야 한다.	-	음 성 이 어 야 한다.
(10) 탄소동위원소비율(‰)	-22.5‰ 이하	-22.5‰ 이하	-22.5‰ 초과	-22.5‰ 초과

「식품위생법」은 이러한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⁶⁾하고 있음.

6)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③ 설탕꿀을 벌꿀에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는 벌꿀의 규격에 부합하지 않아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임. 또한, 식품표시광고법 상 표시를 위반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한 행위에도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⁷⁾이 됨.

벌꿀 등의 표시 기준 등은 벌꿀, 사양벌꿀이 식품에 해당하고 식품에 대한 기본법으로 볼 수 있는 현행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개정안의 ④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⑤ ‘구체적인 표시 방법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식품위생 및 표시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양봉산업법은 양봉산업의 육성과 지원이라는 법률의 취지를 감안할 때, 규제사항은 규제 법령에 규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15

-
1. 제7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조의3(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 7)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참고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22.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라 함은 꿀벌들이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한 자연물 또는 이를 가공한 것으로 벌꿀류, 로열젤리류, 화분가공식품을 말한다.

22-1 벌꿀류

1) 정의

벌꿀류라 함은 꿀벌들이 꽃꿀, 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한 것 또는 이를 채밀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화분, 로열젤리, 당류, 감미료 등 다른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식품유형

(1) 벌집꿀

꿀벌들이 꽃꿀, 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하여 벌집 속에 저장한 후 벌집의 전체 또는 일부를 봉한 것 또는 이에 벌꿀을 가한 것으로 벌집 고유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벌꿀

꿀벌들이 꽃꿀, 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한 것을 채밀, 숙성시킨 것을 말한다.

(3) 사양벌집꿀

꿀벌을 설탕으로 사양한 후 채취한 벌집꿀 또는 이에 벌꿀이나 사양벌꿀을 가한 것으로 벌집 고유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4) 사양벌꿀

꿀벌을 설탕으로 사양한 후 채밀, 숙성시킨 것을 말한다.

5) 규격

항목 \ 유형	벌집꿀	벌꿀	사양벌집꿀	사양벌꿀
(1) 수분(%)	23.0 이하	20.0 이하	23.0 이하	20.0 이하
(2) 물불용물(%)	-	0.5 이하	-	0.5 이하
(3) 산도(meq/kg)	-	40.0 이하	-	40.0 이하
(4) 전화당(%)	50.0 이상	60.0 이상	50.0 이상	60.0 이상
(5) 자당(%)	15.0 이하	7.0 이하	15.0 이하	7.0 이하
(6)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mg/kg)	80.0 이하			
(7) 타르색소	-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8) 사카린나트륨	-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9) 이성화당	-	음성이어야 한다.	-	음성이어야 한다.
(10) 탄소동위원소비율(‰)	-22.5‰ 이하	-22.5‰ 이하	-22.5‰ 초과	-22.5‰ 초과